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8

2025. 9. 1.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문화도시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 **시설현황**

- 강남씨어터 및 전시실

구분	소재지	개관	면적(㎡)	무대면적(㎡)	객석수	관리 인력
공연장(3층)	역삼로7길 16 (역삼동)	2011.1.	324	70.44	232석	1명
전시실(1층)			260	-	-	

- 오유아트홀

구분	소재지	개관	면적(㎡)	무대면적(㎡)	객석수	관리인력
공연장	남부순환로378길 34-9, 4층(도곡동)	2010.1.	264.2	56	138석	1명

○ 위탁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 제3항(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2호) [별표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및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 추진 필요성
  - 공연장,전시실 대관,시설관리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수익적인 사무업무는 자체운영보다는 전문적으로 해당사무를 견인할 수 있는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함이 적합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립 문화공연 시설의 운영 관리업무가 강남문화재단의 수행사업 중 하나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6.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
>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 위탁범위

- 공연장(전시실 포함)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소모품 관리 전반
- 공연장·전시실 대관료 관리 및 세입조치
- 공연장 등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등 각종 제반사항

○ **위탁 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 **위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 203,219천원(구비 100%)**

구 분	총 계	산출내역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203,219천원	인건비(2명)	108,301천원
		운영비	81,562천원
		수선유지비	13,356천원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주요 사항의 검토

○ 본 동의안은 2025. 12. 31. 위탁 만료 예정인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재단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문화재단 조례 제27조에는 문화재단에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경우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본 동의안에는 ▸위탁사무명, ▸시설현황, ▸추진근거, ▸추진필요성, ▸위탁기간, ▸위탁범위 ▸위탁기관 ▸위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과 비교해 보면 명칭이나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포함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임.

○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시설 및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11년부터 강남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해 오고 있음.

[시설 현황]

○ 강남씨어터 및 전시실

구분	소재지	개관	면적(㎡)	무대면적(㎡)	객석수	관리인력
공연장(3층)	역삼로7길 16(역삼동)	2011.1.	324	70.44	232석	1명
전시실(1층)			260	-	-	

○ 오유아트홀

구분	소재지	개관	면적(㎡)	무대면적(㎡)	객석수	관리인력
공연장	남부순환로378길 34-9, 4, 5층(도곡동)	2010.1.	264.20	56	138석	1명

[위탁 현황]

시설명	공연장・전시실		
	강남씨어터	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위탁사무명	강남씨어터, 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기관	강남문화재단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위탁이력	강남문화재단 - 2011. 01. 01. ~ 2013. 12. 31. - 2014. 01. 01. ~ 2016. 12. 31. - 2017. 01. 01. ~ 2019. 12. 31. - 2020. 01. 01. ~ 2022. 12. 31. - 2023. 01. 01. ~ 2025. 12. 31.		

(자료: 문화도시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려는 것은 공유재산 관계 법령상의 관리위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임.

○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방식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 강남문화재단에 수의계약으로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관련 사항 이행 여부 또는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덧붙이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강남문화재단과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종료 예정이므로 향후 수의계약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임.

Ⅱ. 종합의견

○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의 용도 및 강남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그동안의 사업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강남문화재단으로 하여금 해당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하는 것은 강남문화재단이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보임. 다만, 장기간 강남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함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의 운영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위탁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동의안 가결 후 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끝.

강남씨어터 · 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 · 운영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78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문화도시과

1. 제안이유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나. 시설현황

- 강남씨어터 및 전시실

구분	소재지	개관	면적(㎡)	무대면적(㎡)	객석수	관리인력
공연장(3층)	역삼로7길 16 (역삼동)	2011.1.	324	70.44	232석	1명
전시실(1층)			260	-	-	

- 오유아트홀

구분	소재지	개관	면적(㎡)	무대면적(㎡)	객석수	관리인력
공연장	남부순환로378길 34-9, 4층(도곡동)	2010.1.	264.2	56	138석	1명

다.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 제3항(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2호) [별표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및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라. 추진 필요성

- 공연장,전시실 대관,시설관리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수익적인 사무업무는 자체운영보다는 전문적으로 해당사무를 견인할 수 있는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함이 적합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립 문화공연 시설의 운영 관리업무가 강남문화재단의 수행사업중 하나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6.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
>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마.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바. 위탁범위

- 공연장(전시실 포함)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소모품 관리 전반
- 공연장·전시실 대관료 관리 및 세입조치
- 공연장 등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등 각종 제반사항

사.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아. 위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자. 소요예산 : 203,219천원(구비 100%)

구 분	총 계	산출내역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203,219천원	인건비(2명)	108,301천원
		운영비	81,562천원
		수선유지비	13,356천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